

친척(親戚)과 친족(親族)의 개념

이 창 기 *

<목 차>

- | | |
|--------------------------------|--------------------------|
| I. 서론-문제의 제기 | V. 사회인류학계에서 사용하는 |
| II.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척’과 ‘친족’의 개념 | ‘친족’의 개념 |
| III. 조선시대의 ‘친척’과 ‘친족’의 개념 | VI. ‘친족’의 대체 용어 모색: ‘친척’ |
| IV.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친족’의 개념 | VII. 맺는 말 |

<국문초록>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나 그들의 관계 또는 그 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친척(親戚)과 친족(親族)이 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의미가 다른 용어이지만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이나 학계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사전에 의하면 ‘친족’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 즉 부계친(paternal relatives)을 지칭하고, ‘친척’은 부계친과 외척(maternal relatives) 및 처족(wife’s relatives)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구분은 조선왕조실록(Annals of Joseon Dynasty)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조계와 사회인류학계에서는 친족을 부계친과 외척 및 처족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의 kinship을 ‘친척’이라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의 의미는 부계친을 지칭하는 한국어 본래의 의미와 상치되는 것이다. 법조계와 사회인류학계에서 ‘친족’을 부계친과 외척 및 처족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은 한국과 달리 혈연성을 강조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법조계와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중한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 데서 연유한다.

주제어 : 친척(親戚), 친족(親族), 척족(戚族), 외척(外戚), 인척(姻戚), kinship.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I. 서론: 문제의 제기

언어는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대중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약속이다. 이 약속은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거나 인지하는 기준이 되며, 언중들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높은 수준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어가 풍부하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하거나, 동일한 용어가 서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사회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나 개념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학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술 연구에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 영역에서는 대중들과의 언어 소통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원용해서 사용한다. 다만 생활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의미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의미 전달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의미를 재정리하거나 의미를 일정한 범위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기도 한다. 연구하고자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가 일상생활 용어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더욱 엄밀한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생활어)와 학술연구에 사용하는 언어(학술용어)가 서로 상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어 대중과 연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사이에서도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어와 학술용어가 서로 상치되어 의미전달에 혼란이 야기되는 사

레는 ‘친족’이라는 용어의 용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족’이라는 용어는 법조계나 사회인류학계에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회관계나 그 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이를 원용하여 가정학이나 국문학계에서도 ‘친족관계’, ‘친족명칭(호칭)’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계로서 그 관계의 선이 친가, 외가, 처가(시가)의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혼인한 여성의 경우에는 시가 쪽의 관계가 있지만 부처혼(夫處婚)의 혼인관습을 취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혼인한 여성은 남편 집안의 성원으로 편입되고 부부는 동일체라는 관념에 의해 시가 쪽 사람들과의 관계는 독립된 사회관계의 틀로 보기보다는 남편의 친가 관계와 중첩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세 갈래의 관계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 그 관계를 일컫는 용어를 구분하여 그 관계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 세 갈래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외가 쪽 사람들을 외족(外族) 또는 외척(外戚)이라 하고, 처가 쪽 사람들을 처족(妻族) 혹은 인척(姻戚)이라 하여 관계의 선을 구분하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외가와 처가 쪽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친가 쪽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와 세 갈래의 관계를 아우르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친척(親戚)이란 용어와 친족(親族)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다. 친가의 사람들을 ‘친척’이라 하고, 친가·외가·처가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어를 ‘친족’이라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친가의 사람들을 ‘친족’이라 하고, 세 갈래를 아우르는 용어는 ‘친척’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친척과 친족을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어로 보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법조계와 사회인류학계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보다 넓은 범위의 족적관계,

즉 친가·외가·처가를 아우르는 용어로 ‘친족’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친족’이란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친척’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관계의 선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친가 친척’, ‘외가 친척’, ‘처가 친척’으로 구분해 준다.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보다 넓은 범위의 족적관계를 학계에서는 ‘친족’이라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친척’이라 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학계 일부에서는 ‘친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친척’이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연구자와 언중 사이에 의미 소통을 어렵게 하고, 연구자들 상호 간에도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용어를 재정리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미 소통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친가 쪽 사람들(또는 그들의 관계와 그 범주)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둘째, 외가와 처가(시가) 쪽 사람들(또는 그들의 관계와 그 범주)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셋째, 친가, 외가, 처가(시가) 쪽 사람들(또는 그들의 관계와 그 범주)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생활어를 정의한 국어사전의 용어 규정을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친척’과 ‘친족’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법조계와 사회인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친족의 개념과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친척과 친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일상생활 용어와 전문 학술용어의 통일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척’과 ‘친족’의 개념: 국어사전의 용어 정의

생활용어로 사용되는 친척과 친족의 개념은 우선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어대사전』(2009), 민중서림에서 간행한 『국어대사전』(2013),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2014) 등에는 친족(親族), 척족(戚族), 친척(親戚), 외척(外戚), 인척(姻戚)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대사전』>

- 친족(親族)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친속(親屬).
척족(戚族) : 성이 다르지만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친척(親戚) : 자기의 혈족이나 혼인관계를 통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
외척(外戚) : ① 어머니 쪽의 친척.
② 같은 성을 가진 이외의 친척.
인척(姻戚) : 혼인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

<민중서림, 『국어대사전』>

- 친족(親族) : 촌수가 가까운 거래붙이. 친속(親屬).
척족(戚族) : 척(戚)관계가 되는 거래붙이. 성이 다른 일가붙이.
친척(親戚) : 친족과 외척(②).
외척(外戚) : ① 외가의 친척.
② 같은 본을 가진 사람 이외의 친척.
인척(姻戚) : 배우자의 일방과 타방의 혈족 사이에 생긴 척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친족(親族) : 혼수가 가까운 일가. 친속(親屬).
척족(戚族) : 성이 다른 일가.
친척(親戚) : 친족과 외척(②)을 아울러 이르는 말.
외척(外戚) : ①어머니 쪽의 친척.
②같은 본을 가진 사람 이외의 친척.
인척(姻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이상 세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즉 ‘친족’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부계친 즉 친가 쪽 사람들을 의미하고, ‘척족’은 성과 본이 다르지만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외가와 처가(시가) 쪽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척’은 성과 본이 같은 동성친(친족)과 성과 본이 다른 이성친(척족)을 아우르는 말이며, <척족>은 다시 어머니 쪽의 <외척>과 배우자 쪽의 <인척>으로 나누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친(족)과 척(족)을 합성하여 친척이 되고, 외척과 인척을 합해서 척족이라 하여 조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언중의 생활어와도 부합하고 있다.

Ⅲ. 조선시대의 ‘친척’과 ‘친족’의 개념:

조선왕조실록의 용례

현재 시점에서 ‘친족’과 ‘친척’의 개념을 국어사전의 용어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과거 조선시대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종 문집이나 다양한 문서를 통해서도 용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주관이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검토과정을 거친 조선왕조실록이 보다 객관적인 용례를 살펴보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의 원문에는 ‘친척’이 약 600여건, ‘친족’이 약 150여건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세종실록과 조선 후기로 볼 수 있는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세종실록에는 친척이 77건, 친족이 21건 언급되고 있으며,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는 친척이 43건, 친족이 22건 언급되고 있다. 어느 경우이나 친족보다는 친척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친족보다 친척의 범주가 더 넓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록의 기록은 족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족적관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형제와 친족이 없는 자’ ‘친족과 더불어’ 등과 같이 막연한 표현들이 섞여 있어서 그 관계의 추적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들의 족적관계를 추정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친척(親戚)

세종실록에는 친척을 언급한 기사가 77건이나 등장한다. 이 중에서 17건은 동성친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거나 동성친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다수인 60건은 이성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거나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사례였다. ‘친척’을 동성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태상왕(태종)이 환관을 보내어 종친인 봉녕부원군 이복근에게 사제(賜祭) 하였는데, 그 제문에 말하기를, “임금은 친척에게, 살아서는 화목한 은혜를 더하고, 죽어서는 조홀(弔恤)의 예를 행하게 되니 …(太上王遣宦官, 賜祭于奉寧府院君福根曰, 君之於親戚, 生則加雍睦之恩, 死則舉弔恤之禮: 세종 3년 11월 6일 乙丑 3번째 기사)
- ② 황영기는 겸손하고 공순하여 예(禮)로써 행동하였다. 그 아버지는 본시 3품의 벼슬을 하였는데 계급을 뛰어넘어 밀직(密直)에 올려, 이 무리들의 친척을 양부(兩府)에 올려 주었으니(黃永起則謙恭以禮, 故其父本添職三品, 而超授密直, 此輩親戚, 陞授兩府: 세종 13년 8월 28일 庚申 6번째 기사)

- ③ 종학의 종친에게 일찍이 유사(有司)를 두었으니, 경녕군이 이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친척 사이에 유사라고 일컬으면서 그 과실을 기록하여 서로 꾸짖는다면 혐의가 일어날까 두려우므로…(宗學宗親, 曾置有司, 敬寧君是已。予謂親戚間, 稱爲有司, 記其過失相責, 恐將超嫌: 세종 13년 11월 19일 庚辰 2번째 기사)
- ④ 작고한 경창부윤(慶昌府尹) 이상흥(李尙興, 세종의 재종숙)에게 제사를 내리니, 그 교서에 이르기를, ‘…경은 친척의 후예로서 …(賜祭于卒慶昌府尹李尙興, …惟卿以親戚之裔: 세종 16년 1월 28일 丙午 3번째 기사)

이상 예문 ① ② ③ ④는 ‘친척’을 동성친(부계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사례이다.

한편 이성친(외척과 인척)을 ‘친척’이라 지칭한 사례는 동성친을 지칭한 경우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성친을 ‘친척’이라 지칭한 사례들이다.

- ⑤ 상왕이 말하기를, “사은사는 반드시 친척을 보내야 한다. 한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심온만 못하다(上王曰, 謝恩使須遣親戚, 韓長壽雖親戚, 不若沈溫: 세종 즉위년 8월 23일 庚子 2번째기사)
- ⑥ 박은이 이르기를, 장운화는 나의 친척이요, …태상(太上)이 박은을 친척이라 하여 덮어서 두호한 때문이었다(朴崑曰, 張允和吾之親戚, …太上以朴崑親戚掩護也: 세종 3년 10월 19일 戊申 5번째기사)
- ⑦ 진헌색(進獻色)이 계하기를, 이번 처녀를 선택하여 고를 때에 종실의 친척과 전조(前朝) 왕씨와 귀화하여 온 사람과 국가에 관계되는 죄인의 딸자식은 모두 간선(揀選)하지 말게 하소서(進獻色啓, 今處女選揀時, 宗室親戚及前朝王氏、向化人、關係國家罪人女子, 勿并選揀: 세종 6년 7월 20일 癸巳 5번째기사)

예문⑤에서 태종이 한장수와 심온을 친척이라 하였으며, 예문⑥에서 박은이 장운화를 친척이라 이르고, 박은은 태종의 친척이라 하였다. 예문⑦에서도 처녀 간택 시 종친의 친척을 배제하자고 한 것은 모두 이성

친을 친척이라 한 사례들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친척’은 동성친(부계친)뿐만 아니라 이성친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친척’의 용례는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서도 세종실록의 용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는 친척을 언급한 기사가 43건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이성친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거나 이성친 포함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33건, 동성친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기사가 7건, 관계를 전혀 추정할 수 없는 사례가 3건 나타나고 있다.

2. 친족(親族)

‘친척’이 동성친(부계친)과 이성친(외척과 인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친족’은 이성친에게 사용한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동성친의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친족’이 언급된 150여건의 기사 중 세종실록의 21건, 영·정조실록의 22건을 살펴본 결과 ‘친족’이 이성친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사례는 영조실록에 이성 7촌조카를 ‘친족’이라 기록한 단 한 사례가 발견될 뿐이고, 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5~6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는 동성친이 명확하거나 동성친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었다.

다음 ⑧은 이성 7촌조카를 ‘친족’이라 칭한 사례이다.

- ⑧ 정사주(鄭師周)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호적이 없고 또 추천자의 성명도 몰랐기 때문에 빼내려 하니, 시관(試官) 홍덕망(洪德望)이 자기의 칠촌 조카라고 하면서 감히 비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미 어긋난 단서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시관의 친족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니 …(有鄭師周者, 既無戶籍, 又不識保舉姓名, 故欲爲拔去, 則試官洪德望謂其七寸姪, 敢發容護之言。 臣以爲, ‘既發違端, 何可以試官親族, 有所容貸? …: 영조 20년 3월 11일 己丑 2번째기사)

이성친을 친족이라 칭한 사례가 단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성친을 ‘친족’이라 부르지 않고 동성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은 ‘친족’을 동성친이나 동성친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지칭한 사례들이다.

- ⑨ “부자(父子)가 서로 기생 하나를 간음하고, 또 모녀나 여형제가 한 남자를 간통했다(有父子姦一妓母女兄弟姦一夫).”는 보고를 받고 임금이 “형제와 친족이 함께 기생 하나를 간음했다는 것은 간혹 있을듯하나 그러나 어찌 알고서도 짐짓 간음한 자가 있으랴”고 하였다(兄弟親族同姦一妓者似或有之, 然豈有知而故姦者乎? : 세종 1년 6월 14일 丁亥 3번째기사).
- ⑩ 부모와 조부모도 모르는 친족 없는 자는 본관을 알지 못한다고 호적에 기재하여, (不知父母祖父母無親族人 以不知本貫錄籍: 세종 6년 11월 2일 癸酉 6번째기사)
- ⑪ 을봉(乙奉)의 어머니는 나이 33세에 남편이 죽어 3년의 상기(喪期)를 마쳤는데, 그의 모친이 친족과 더불어 시집보내려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였고(乙奉母, 年三十三夫死, 喪三年畢. 母與親族欲奪志, 不從: 세종 10년 10월 28일 丙午 6번째기사)
- ⑫ 양반의 자제로서 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와 친족이 사유를 갖추어 승록사(僧錄司)에 보고하고(兩班子弟願爲僧者, 父母親族具由報僧錄司: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3번째기사)
- ⑬ 이기우(李奇遇)는…어머니가 죽으매…여막에 거처했고, …아버지가 또 죽으므로 또 3년 동안을 무덤을 지켰는데, 친족들이 그가 홀아비로 사는 것을 민망히 여겨(李奇遇…母沒…哀慟居廬, …父又歿…又守三載, 親族憫其鰥居: 세종 14년 9월 13일 戊辰 1번째기사)
- ⑭ 장령 윤삼산(尹三山)은 겸이조판서(兼吏曹判書) 하연(河演)의 인당(姻黨) 친족으로 한집안같이 좋게 지내는 사이입니다(掌令尹三山, 兼判吏曹河演之姻黨親族而通家交權者也: 세종 24년 1월 13일 乙亥 3번째기사)
- ⑮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비록 죽을죄를 당하더라도 부자와 형제간에도 오히려 서로 미치지 않거든, 하물며 별주고 징계하는 죄로써 친족에게 미치어

소원한 사람에게까지 이르니, 어찌 이치에 합당하겠습니까(臣等竊謂雖當死罪, 父子兄弟, 尚不相及, 況以罰懲之罪而延及親族, 以至疎遠, 豈合於理? 若曰家貧及在逃者, 置而不論, 無以懲惡, 則親族何罪, 亦懼此禍乎: 세종 28년 5월 3일 庚午 1번째기사)

- ①6 이조판서 김동필이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능지처참을 당한 박필몽의 중제를 능참봉에 천거하자 이양신이 상소하여 논척하였는데 임금이 '역적의 친족으로서 국법을 응당 시행해야 할 자 이외에는 구애 없이 등용하라고 명하였다(先是, 吏判金東弼, 以朴弼或擬寢郎, 卽弼夢之從弟也. 李亮臣疏斥之東弼疏下, 上敎曰, 命逆賊親族國法應施者外, 無拘調用: 영조 5년 3월 4일 戊申 3번째기사)
- ①7 황재징은 황진기의 친족으로 …(黃再徵以黃鎮紀親族… : 영조 9년 6월 12일 辛酉 5번째기사)
- ①8 넷째 옹주(翁主)가 홍역을 앓았는데, 병이 심해지자 의관(醫官)이 친족(親族)의 집으로 옮겨서 피병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행하지 말라. 비록 종신(宗臣)의 집이라도 만약 어린 자식이 있으면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第四翁主夭. 翁主患疹, 疾劇, 醫官奏以 則移避親族家. 上曰: "己所不欲, 勿施於人. 雖宗臣家, 若有幼子, 不欲送之: 영조 12년 4월 12일 丙子 1번째기사)
- ①9 김재로는 송인명의 인척 조영국을 추천하였으며, 송인명은 김재로의 친족 김치후를 천거하였습니다(金在魯進宋寅明之親查趙榮國, 宋寅明舉金在魯之親族金致堉: 영조 20년 10월 14일 丁巳 2번째기사).
- ②0 정심은 자못 글을 알고 정방은 명경과(明經科) 출신인데, 정방과 친족이 되며 또 같이 사니…(鄭心頗識文, 鄭枋則明經科也, 與鄭枋爲親族, 而又爲同居… : 영조 36년 9월 18일 己未 2번째기사)
- ②1 심삼은 곧 심의지의 친족으로서(沈鋸卽沈儀之之親族: 영조 46년 4월 2일 己酉 3번째기사)
- ②2 홍상범의 친족 홍필해의 공초에는 …, 홍계능은 홍상범의 친족이고 …(洪相範親族洪弼海供稱 …, 洪啓能則以洪相範親族 … : 정조 1년 10월 26일 戊午 2번째기사)

이상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검토해 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전기와 후기에 걸쳐 ‘친족’은 동성친(부계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친척’은 동성친과 이성친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친척’은 친가, 외가, 처가(시가)를 아우르는 용어였으며, ‘친족’은 친가 쪽만을 지칭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고대에는 ‘친(親)’과 ‘척(戚)’은 항상 같이 사용하여 부계친뿐만 아니라 모당, 처당 등의 인척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한(漢)나라 때에 와서 의미의 차이가 명확해져 모족, 처족 등을 ‘외척(外戚)’으로 분리하여 명칭상 구분되었다고 한다¹⁾. 조선왕조실록에서 ‘친족’을 부족(父族)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모족과 처족 즉 ‘척족(戚族)’을 아울러서 ‘친척(親戚)’이라 한 것은 한 대 이후 중국의 용례와도 상통하고 있다.

VI.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친족’의 개념

‘친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통용된 친족이란 용어는 주로 부계혈족 즉 친가 쪽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 이후 법조계나 사회인류학계에서 사용하는 친족이란 용어와는 의미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보다 넓은 범위(친가·외가·처가)의 족적관계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친족’을 사용한 것은 법조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근대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됨으로써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사회의 법률적 규제는 일본의 법률체계에 편입되었고, ‘친족’이란 법률용어의 사용도 1912년 ‘조선민사령’이 반포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는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

1) 王風洋(1993),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pp.322-323.

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선인의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일본 민법에 의거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제11조에서 “제1조의 법률 중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적용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관습을 크게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족적 관계를 일컫는 용어는 일본 민법에서 사용하는 ‘친족’이란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²⁾ 1898년에 제정 공포된 일본 민법 제725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6등친(6촌) 내의 혈족, 배우자, 3등친 내의 인족(姻族)으로 규정하여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친가·외가·처가의 일정 범위의 관계자를 아우르고 있다.

일본에서 ‘친족’을 친가, 외가, 처가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지 않고 이성양자가 광범하게 이루어져서 친가, 외가, 처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일본의 가족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민법을 제정하지 못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제강점기의 민법체계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1960년부터 시행된 새 민법도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하여 일본 민법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고, 법률행위와 관련된 용어도 일본 용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친족’이란 용어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일정 범위의 친가·외가·처가 관계자를 아우르는 의미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법률적인 친족의 범위가 다소 수정되었을 뿐이다. 즉 제정 당시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반영한 것으로서 친가와 외가, 시가와 처가의 친족의 범위에 현격한 차별이 있는 것이었다. 이에 1989년 개정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부계, 모계),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여 외가의 친족 범위가 친가와 마찬가지로 8촌까지

2) 조선총독부(1912), 『조선민사령』.

확대되고, 처가의 친족범위도 처의 부모에서 4촌까지로 확대되었으나 시가의 친족범위는 8촌에서 4촌으로 축소되었다. 남녀(부계와 모계)평등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그 범위에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친족’이라는 법률 용어는 1912년 조선민사령 이후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친가, 외가, 처가(시가)의 일정 범위의 사람을 아우르는 용어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과 법학 관련 논저에 거의 예외 없이 두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조계 내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V. 사회인류학계에서 사용하는 ‘친족’의 개념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친족(親族)’이라는 용어를 영어의 ‘kin’ 혹은 ‘kinship’에 대응하는 개념어로서 두루 사용하고 있다. kinship은 ‘혈연관계나 혼인관계에 의해서 결합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kinship 즉 친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친가와 외가의 사람들, 혼인관계로 맺어진 처가(시가)의 사람들 등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앞에서 국어사전과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를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친족’이란 용어를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부계친 즉 친가 쪽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kinship’을 ‘친족’으로 번역하거나, ‘친족’을 친가, 외가, 처가(시가)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용례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계나 인류학계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친족’을 친가, 외가, 처가(시가)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kinship’을 ‘친족’ 혹은 ‘친족관계’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사회의 언어관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독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³⁾

친족을 친가, 외가, 처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 예는 김두헌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두헌(金斗憲)은 친족을 친속(親屬), 친척(親戚)과 같은 의미로 보고, 종족(宗族, 동성친)을 근간으로 하여 모족과 처족을 포함하는 의미로 친족의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

“친족이란 말은 친속(親屬), 친척(親戚), 족척(族戚), 족속(族屬), 친류(親類)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당송(唐宋) 이래 친속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조에서도 여러 법전에 보통 친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신자전(新字典)』에 의하면 ‘族’이나 ‘戚’을 ‘겨레’ 또는 ‘무리’로 훈(訓)하여 친속(親屬), 친족(親族), 친척(親戚)을 동의어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⁴⁾

“친족의 종별을 나눔에 『이아석친(爾雅釋親)』에는 宗族, 母族, 妻族의 三族에 婚姻을 더하여 四類로 하였다. … 이는 요컨대 宗族, 母黨, 妻黨의 一族二黨組織 이외의 것은 아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례는 그대로 한국에서 답습되었다. 즉 부계적 혈연집단으로서의 宗族이 本幹이 되고 異姓의 諸族은 第二次的인 親族關係를 구성한 것이었다.”⁵⁾

이 인용문을 언뜻 보면 『이아석친(爾雅釋親)』에서 ‘친족’을 종족, 모당, 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아』의 〈석친〉 편에는 종족, 모당, 처당, 혼인으로 나누어 친척 명칭을 해설하고 있으나 ‘친척’이나 ‘친족’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⁶⁾ ‘종족이 근간이 되고 이성의 제족은 이차적인 친족관계를 구성

3) 이러한 논의에는 인류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kin, kinship, kindred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이들 용어의 적절한 번역어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친척’과 ‘친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친가, 외가, 처가(시가)를 아우르는 용어는 ‘친족’보다 ‘친척’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4) 김두헌(1949),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p.164.

5) 김두헌(1949),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p.166.

6) 『爾雅』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해석 사전으로 공자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13經 중의 하나이다. 『爾雅』는 <釋器> <釋木> <釋魚> 등 1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釋親>편에서 친척(친속)의 명칭을 해석하고 있다. 이충구

한 것'이라는 진술은 김두현이 자의로 규정하여 덧붙인 것이다. 이처럼 김두현이 '친족'을 종족, 모족, 처족을 아우르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일본의 용례를 그대로 수용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효재는 1971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350가구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도시인의 친족관계』를 간행하였다. 저자는 이 보고서에서 '친족(관계)', '친척(관계)'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두 용어 모두 응답자(주부)의 시대과 친정에 관련된 자들을 지칭하여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두 용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친족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그 범주 내에서 간밀하게 접촉하는 개인이나 개별 가족을 지칭할 때는 친척이라 표현하여 역간의 의미 차이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광규도 “친족이란 ‘혈연(consanguinity)과 인척(affinity)으로 연결된 것을 말하며, 이를 친족관계(kinship relation)라 한다. 친족관계에 의해 형성된 사회집단을 친족집단(kin group) 또는 단지 친족이라고도 한다.”⁷⁾고 규정하여 부계친뿐만 아니라 외척과 인척을 포함하는 kinship의 번역어로 친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문웅(李文雄)도 kinship의 개념에 충실하여 친족을 혈족(부계친과 외척)과 인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친족은 혈연관계와 인척관계에 의해서 결합된 사람들을 말한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의 친족을 말할 때에는 혈족을 주축으로 하여

외 역주, 『이야주소』 2, 소명출판, 2004, 참조.

7) 이광규(1987), 『문화인류학』, 일조각, p.126.

인척 중에서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집단을 가리킨다. 우리의 친족제도가 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쪽의 사람들보다 아버지 쪽의 혈족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흔히 친족을 바로 혈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인척도 친족에 포함 된다”⁸⁾

최인학도 친족을 “출생, 혼인에 의해 맺어진 계보적 유대 혹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람들의 총칭”⁹⁾으로 규정하여 kinship의 개념에 충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인류학계에서는 ‘친족’을 영어의 kinship에 대응하는 번역어로서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 즉 친가·외가·처가를 포괄하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관계 또는 그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세 갈래의 관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사회인류학계에서 사용하는 ‘친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범조계의 용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인류학계에서 ‘친족’을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서양의 학문을 수입하면서 kinship을 ‘親族(しんぞく)’으로 번역한 일본 학계의 용례를 그대로 수용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VI. ‘친족’의 대체 용어 모색: ‘친척’

사회인류학계에서 친족의 개념을 kinship의 번역어로서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 ‘친척’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친족’ 대신에 ‘친척’이란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8) 이문웅 외 2인(1985), 『문화인류학』, 서울대출판부, p.138.

9) 최인학(1986), 『문화인류학』, 새문사, p.54.

‘친족’은 부계·남계친(친가)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하고, 친가·외가·처가를 아우르는 kinship의 대응어는 ‘친척’이라야 한국인의 언어 감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처음 밝힌 학자로 이광규를 들 수 있다. 이광규(李光奎)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족’의 의미를 중시하여 ‘친족’은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하고, ‘친척’을 외척과 처족을 포함하는 용어로 규정한 바가 있다.

“본문에 앞서 몇 가지 유의하여야 될 것의 하나는 친족(親族)과 친척(親戚)이라는 개념구분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친족과 친척을 혼돈하여 사용한 것 같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친척을 친족, 외척, 인척으로 구분하니 친족은 부계를 중심한 친척으로 부계의 남자는 물론 고모와 같은 출가자와 부계 남자의 배우자도 포함하며 이를 부당(父黨)이라고도 한다. 외척이란 모의 부계친척으로 모당(母黨)이라고도 하며, 인척이란 처의 부계친척을 지칭하며 처당(妻黨)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주의할 것은 친족이란 개념이 부당에 한정된 것이고, 친척이란 개념이 부당, 모당, 처당을 포함하는 광의적이라는 것이다.”¹⁰⁾

“우리나라의 친족제도를 말할 때 흔히 1族2黨制라 한다. 이것은 친척을 분류함에 부계친인 친족, 모계친인 외척 그리고 처계친인 인척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黨으로 표시하여 父黨·母黨·妻黨이라 하기도 하고, 族字를 사용하여 宗族·母族·妻族이라 하기도 하며, 宗族·母黨·妻黨을 1族2黨制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族黨制에서 친족이란 부계친족만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 3족을 포괄하는 용어로는 친척이 있다. 친척과 친족을 엄격히 구별한다면 영어의 kinship은 친척에 해당하며 부계친 또는 남계친만이 친족에 해당한다.”¹¹⁾

이광규는 이렇게 친족을 부계의 친척으로, 친척을 부당, 모당, 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구분하였으나, 1987년에 간행한

10) 이광규(1971), 「한국의 친척명칭」, 『연구논총』 1, 서울대사대교육회.

11) 이광규(1984), 『사회구조론』, 일조각, p.5.

『문화인류학』에서 친족을 혈족과 인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이후¹²⁾ 모든 논저에서 친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계의 큰 흐름에 따라 친가, 외가, 처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친족이란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다.

최재석과 이창기는 친족이란 용어가 일상생활어와 법률용어 및 학술용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으나 더 깊은 논의 없이 문제의 제기에 그치고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보편적 학술어로 널리 사용하는 친족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¹³⁾

전경수는 친족과 친척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촌락의 사회조직을 분석한 한 논문에서 ‘친족’이란 용어 대신 ‘친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일본 산음촌락의 사회조직」의 제Ⅲ장에서 ‘가(家)의 계승과 친척관계’란 소제목으로 족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¹⁴⁾

이어서 전경수는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던 2001년에 연구소의 학술심포지움을 기획하면서 주제를 ‘친척과 혈통의 통문화론’으로 설정하고, 자신도 베트남의 친척조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는 전경수 외에도 10명의 인류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발표 논문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각주 7) 참조.

13) 최재석·이창기(2001), 「친족제도」, 『한국민속의 세계』(제1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415-417.

14) 전경수(1991), 「日本 山陰村落의 社會組織」, 『아세아여성연구』 30,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제12회 학술심포지움

親戚과 血統의 通文化論

(2001년 4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당내의 성격 — 김성철

흑산도의 친척조직: '큰집'과 '내룽'을 중심으로 — 김창민

중국 한족의 지아(家), 친치(親戚), 쑹쭈(宗族) — 주영하

오끼나와의 문츄화(門中化) 현상 — 조수미

일본의 이에(家)와 도조쿠(同族) — 임경택

가보(家譜)로 본 베트남의 친척조직 — 전경수

몽골의 야스(曷)와 초스(竊) — 박환영

필리핀 친척의 양변성과 '집단'만들기 — 김민정

남인도의 친척과 인척, 그리고 혼인 — 박정석

휘지의 마땅갈리와 야부사 — 이태주

멕시코의 폼빠드라즈고 — 김세건

요루바 친척에서의 이딜레, 에비, 그리고 컴파운드 — 한건수

이날의 심포지움은 주제를 '친척과 혈통'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11편의 논문 중 6편의 논문 제목에 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래 인류학계의 용례를 따른다면 모두 친족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지만 친척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연구소 내부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공감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심포지움은 kinship의 번역어가 친족보다는 친척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자리가 된 것으로 친족과 친척의 개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중 김민정과 박정석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친척'이란 용어를 다시 '친족'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지만¹⁵⁾ 김창민은 '친척'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친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각주로 밝히고 있다.

15) 김민정(2002), 「필리핀 친척의 양변성과 '집단'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박정석(2002), 「남인도의 친족분류와 혼인에 관하여」, 『남아시아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일반적으로 kinship은 ‘친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kinship은 단계혈통집단(unilineal descent group)과 결연관계(alliance)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친족’은 한국사회에서 부계혈통집단만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친족과 인척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친척’이 kinship의 번역어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친척’을 kinship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¹⁶⁾

한편 ‘멕시코의 꿈빠드라즈고’를 발표한 김세건은 이 발표문을 확대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멕시코 농촌가구와 친척관계의 구조 및 변화양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친족관계라는 용어 대신에 친척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⁷⁾

사회언어학계에서는 일정한 족적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접 부르거나 (호칭) 제3자에게 그 관계를 지시하는 용어(지칭), 즉 kinship term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 계층별로 그 용어의 사용실태를 조사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언어학계에서도 범조계나 사회인류학계와 마찬가지로 kinship을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친족’으로 번역하여 ‘친족용어’ ‘친족호칭’ ‘친족명칭’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년 이후 ‘친족’ 대신에 ‘친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kinship를 친척으로 번역하던 학자들이 언어 대중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어를 중시하여 학술용어로 채택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kinship term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왕한석도 종래 친족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2000년 이후에는 친족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일체의 논저에서 ‘친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⁸⁾

16) 김창민(2001), 「흑산도의 친척: ‘큰집’과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7-2,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7) 김세건(2004), 「멕시코 농촌가구와 친척관계의 구조 및 변화양상」, 『라틴아메리카연구』 17-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8) 왕한석이 2000년 이후 ‘친척’이란 용어로 발표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언어생활의 특성과 변화: 신분지위호칭과 의사친척호칭의 사용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8-1, 2000, 「영남인의 친척용어」, 『민족문화논총』 22, 2000,

이처럼 사회인류학계에서는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친가, 외가, 처가(시가)를 아우르는 kinship의 대응어로 사용하는 ‘친족’이란 용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친족’이란 용어를 ‘친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오랜 관행의 벽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친족’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Ⅶ. 맺는 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친족이라는 용어를 사회 일반의 용례와는 다르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왔다. 사회구성원들의 언어 관습과 상이한 이러한 용어를 학술적인 개념어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차체에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전문용어와 생활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 일반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친가 외가)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처가)를 두루 아우르는 용어로 ‘친척’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친족’이라는 용어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친가의 사람들(부계친)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문용어를 일상생활 용어와 일치시켜서 성과 본을 같이하는 ‘친족’과 성과 본이 다른 ‘척족’을 아우르는 용어를 ‘친척’으로 하고, 척족을 다시 어머니 쪽의 ‘외척’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말의 조어체계와도 부합되고 언어사용의 혼란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친척 혹은 친족이라는 용어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범위에 적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광범한 한국의 부계혈연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범위에 걸친 부계혈연자나

「친척 관련 속담의 민족지적 연구」(『사회언어학』 10-1, 2002), 「한국 친척용어 조사표」(『한국의 언어민속지 1:서편』, 교문사, 2009), 「친척용어체계」(『한국의 언어민속지: 경상남북도 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부계혈연집단 만을 지칭할 때는 ‘종족(宗族)’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외척이나 인척은 그 관계의 범위가 실제로 한정되어 있어서 외가 친척, 처가 친척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親 戚 친족과 척족	
親 族 성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戚 族 성과 본이 다른 겨레붙이
外 戚 어머니 쪽 친척	姻 戚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參 考 文 獻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 민중서림(2013), 『국어대사전』.
- 조선총독부(1912), 『조선민사령』.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김두헌(1949), 『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 김민정(2002), 「필리핀 친족의 양변성과 ‘집단’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 김창민(2001), 「흑산도의 친척: ‘큰집’과 ‘내롱’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7-2,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 김세건(2004), 「멕시코 농촌가구와 친척관계의 구조 및 변화양상」, 『라틴아메리카연구』 17-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박정석(2002), 「남인도의 친족분류와 혼인에 관하여」, 『남아시아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2001), 『親戚과 血統의 通文化論』, 제12회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 王風洋(1993),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 왕한석(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 편)』, 서울대출판부.
- 이광규(1971), 「한국의 친족명칭」, 『연구논총』 1, 서울대사범대학교육회.
- _____ (1984), 『사회구조론』, 일조각.
- _____ (1987), 『문화인류학』, 일조각.
- 이문웅 외 2인(1985), 『문화인류학』, 서울대출판부.
- 이충구 외 역주(2004), 『이야주소』 2, 소명출판.
-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 전경수(1991), 「日本 山陰村落의 社會組織」, 『아세아여성연구』 30,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최인학(1986), 『문화인류학』, 새문사.
- 최재석·이창기(2001), 「친족제도」, 『한국민속의 세계』(제1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0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ABSTRACT>

The Concept of *Chincheok*(親戚) and *Chinjok*(親族)

Lee Chang Kee

Both '*chincheok*(親戚)' and '*chinjok*(親族)' have been used in academia to indicate the people's relationships or the groups formed by marriage and blood relation. The misuse of the two terms is not rare in Korean everyday life or academic usage while their meanings are actu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Korean dictionary, '*chinjok*' refers to close family members among paternal relatives only, while '*chincheok*' is defined as 'including the paternal, maternal, and wife's relatives altogether', which is also found in *the Annals of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Nevertheless, it is still prevalent among Korean scholars including jurists and social anthropologists that the '*chinjok*' is misused to indicate all the paternal, maternal, and wife's relatives, with '*kinship*' inaccurately translated into '*chinjok*'. For this case, '*chincheok*' is thought to be accurate translation for kinship. It is thought that it could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Japanese word 'しんぞく(親族)', which has little emphasis on blood relation, was accepted with insufficient review of it.

Key words : chincheok(親戚), chinjok(親族), paternal relatives, kinship, maternal relatives, wife's relatives.